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0回平昌郡議會

第 4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6月 10日(月) 15時00分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1. '96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
2. 政府의 小規模教育廳統·廢合方針撤回促求建議案
3.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變更同意案
4. 1996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5.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6.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查委員選任의 件
7. 平昌郡褒賞條例의 改正條例案
8.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條例의 改正條例案
9. 平昌郡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의 改正條例案
10. 平昌郡稅條例의 改正條例案
11. 平昌郡稅減免條例의 改正條例案
12. 平昌郡廢棄物管理에 關한 條例의 改正條例案
13.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 行爲制限에 關한 條例案
14. 平昌郡水道給水條例의 改正條例案
15. 平昌郡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附議된案件

- 1. 報告事項 _____ 3 面
- 2. '96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 (金鍾永議員外6人) _____ 3 面
- 3. 政府의 小規模教育廳統·廢合方針撤回促求建議案 (李洙現議員外3人發議) 5 面
- 4.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平昌郡守提出) _____ 7 面
- 5. 1996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平昌郡守提出) _____ 8 面
- 6.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平昌郡守提出) 9 面
- 7.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 (議長提議) _____ 11 面
- 8. 平昌郡褒賞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1 面
- 9.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1 面
- 10. 平昌郡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3 面
- 11. 平昌郡稅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4 面
- 12. 平昌郡稅減免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4 面
- 13. 平昌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6 面
- 14.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에關한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18 面
- 15.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에關한條例案에 대한審議保留動議(劉燉文
議員發議)_____ 19 面
- 16. 平昌郡水道給水條例증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20 面
- 17. 平昌郡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平昌郡守提出)_____ 25 面

(15時00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이번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회기내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종합한 현지확인 결과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등 중요안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5時01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 議長 金樂雲 : 사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니다.

2. '96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金鍾永議員外6人)

(15時0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종영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永 議員 : 김종영 의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27일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들은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사업장 주변의 농경지 경작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업장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95수해복구사업 추진은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우기전 시공회사와 시행부서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문제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인대상 사업장중 도암면 청사 신축공사 및 경지정리 사업등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부재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부실시공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이 요구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보광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오수처리 시설이 법적처리 기준치 이하로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었으나 스키장과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폭우시 탁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부면 척천리의 다가구 주택 및 식당 건축물은 하천변과

인접하여 있으면서 정화조 시설이 법적 기준 이하로 시공되는등 갈수기에 하천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상수원 상류지역 및 하천변에 건축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반허가 및 오염원 처리기준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개선 하는등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규정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관허사업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추진하므로 군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온 군민이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속에서 희망을 갖고 복된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을 최우선시 하는 위민행정을 실천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제반 개선사항들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실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

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 활동이 의원 여러분에게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획득에 크게 도움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성실한 업무수행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96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김종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종영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본 안건은 사전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로 작성되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확인결과 도출된 제반사항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3. 政府의小規模教育廳統·廢合方針撤回促求建議案(李洙現議員外 3人發議)

(15時06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소규모교육청 통·폐합방침철회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洙現 議員 : 이수현 의원입니다.

정부의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여 절약한 예산을 도시 지역의 교육청 확충에 충당하겠다는 탁상공론식의 방침을 정한것은 교육의 장래에 대한 한치앞도 못내다 보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써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현들은 수천번에 걸친 외적의 침략하에서도 결코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제 36년 치하에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굴하지 않은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를 바로 서게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문제를 충분한 민의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 하려는 행위는 지역의 특성을 전혀 무시하고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

는 처사로 간주하여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방침을 즉각 철회 할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한 정부의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

· 政府의小規模教育廳統·廢合方針撤回 促求建議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이수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 중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소규모교육청 통·폐합방

침철회측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平昌郡守提出)

(15時09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동의안을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취득1건, 교환취득1건, 교환처분1건등 총 3건으로 취득재산 1건은 평창군의회 청사증축 522㎡이며 교환취득1건은 군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사유림 3필지 12,109㎡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환처분 1건은 사유림취득에 대한 교환처분 1필지 8,132㎡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1996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p>(끝에 실음)</p> <p>.....</p> <p>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아무소리가 없음)</p> <p>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p> <p>그러면 1996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 하는이 있음)</p> <p>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p>	<p>○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입니다.</p> <p>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먼저 제안사유는 급수구역내의 개발에 따른 물수요 충족 및 농촌지역의 급수정제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합니다.</p> <p>주요골자는 사업명은 진부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서 기체규모는 10억원입니다 기체서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 되겠고 이율은 7%가 되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p> <p>참고로 말씀 드리면 당초사업 계획시에 총재원 72억3,000만원중에 국비 30억 원도비 12억3,000만원, 지방채 30억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p> <p>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p> <p>< 參 照 ></p>
<p>5. 1996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p> <p>(平昌郡守提出)</p> <p>(15時13分)</p> <p>○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 합니다.</p> <p>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1996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

會計追加更正豫算案 (平昌郡守 提出)

(15時18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돈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1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7일자로 회부받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억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9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9,600만원으로 당초대비 23.5%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및기타경비와 특별회계 세출중 상수도특별회계의 사업비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및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 중앙지 구독에 960만원, 군상징용품 제작비 1,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도민체전출전비 2,348만원, 주부환경과수꾼 활동제작비 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들배나무식재비 646만원, 마평2리 세월교 가설공사 시설비 7,000만원등 총 1억2,6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

고 특별회계 세출중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에서 누수지점 긴급수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參 照 >

-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 1996年度第1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回計追加更正豫算案

(以上 2 件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유돈문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檢查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23分)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대한 평창군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 할 수

있는 2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 사전 협의된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우강호의원, 위원에 의회가 추천한 김종득씨와 평창군수가 추천한 김성래, 황원섭씨등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平昌郡褒賞條例중改正條例案

9.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2件 平昌郡守 提出)

(15時24分)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課長 李永德 : 내무과장 이영덕

입니다.

내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포상조례 개정 및 상훈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평창군 포상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심의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으로 평창군인사위원회를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고 평창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며 위원지정은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 내무과장, 위원에 기획실장, 사회, 산업, 산림, 건설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서무계장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법의 개정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지방세조례도 도가 징수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에 내부위임규정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되어 평창군사무에 읍면위임조례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평창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에 군세부과징수사무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褒賞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
지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平昌郡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5時3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 문화공보실장 고창식 입니다.

평창군 비지정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의 비지정관광지의 입장료에 대한 감면계획을 군정에 반영하고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청소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자연보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청소수수료를 지역주민이나 외지이용객이나 할것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지정요금의 100%를 징수한바 금번조례개정을 통해서 평창군이 군내 비지정관광지를 이용시 청소수수료 50%를 경감하는것에 있

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非指定觀光地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平昌郡稅條例중改正條例案

12.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2件 平昌郡守提出)

(15時34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權赫昇 : 재무과장 권혁승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9호인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군세조례중 개정해

야할 사항 및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특히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수납을 법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채납액이 증가하고 또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점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 및 내무부령이 개정되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부과징수업무가 종전에 평창군사무인 내부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던것을 평창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로 개정을 하고 둘째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지역을 유인물 4페이지에 있는 별표1과 같이 34개마을로 정하고 셋째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로 정하므로서 금융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오지지역 34개리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군세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종전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를 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등의 계획에 따라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계획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해가지고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를 하고 둘째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에 의해서 그중에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參 照 >

- 平昌郡稅條例증改正條例案
- 平昌郡稅減免條例증改正條例案
- (以上2件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平昌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5時37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李敬洙 : 환경보호과장이경수 입니다.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95년 8월 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 4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일반폐기물 배출자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등으로 각각 정리 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비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를 마련 했습니다.

특별관리 지역과 일반관리 지역으로 구분해서 특별관리지역은 관광지, 비지정 관광지, 산림, 하천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일반관리지역은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인상된 과태

료를 부과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계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 參 照 >

· 平昌郡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
 有關한條例案(平昌郡守提出)

(15時41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洪基杓 : 건설과장 입니다. 평창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4년 1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행위규

제가 강화됨으로써 주요 도로변의 농촌 지역에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미풍양속 저해와 하천오염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위제한 대상시설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종류별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지역 준농림지역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련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을 11개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군 실정에 적합토록 조정 하도록 되어 있고 제한지역 지정절차로서는 지정안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창군수가 고시 및 공고 게재해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주민대표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위허가의 통합처리는 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를 개별 처리시 민원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처

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에 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문 의원 발언하십시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 불균형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충분히 검토후 심의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심의를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15. 平昌郡準農林地域안에서의行爲制限에 關한條例案에 대한審議保留動議 (劉燉文 議員發議)

(15時43分)

○ 議長 金樂雲 : 방금 유돈문 의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금 유돈문 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유돈문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중 7명 전원이 찬
성하여 유돈문 의원의 심의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 平昌郡水道給水條例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5時4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4항 평창
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
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도시과장 권순철
입니다.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상수도요금이 톤
당 320원으로서 총괄 생산원가 696원에
훨씬 못미침으로써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부채 또한
해마다 누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맑은물 공급에 대한 주민요
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추세에 비추어 볼
때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반면, 낮은 수도요금과
군 재정력 빈곤으로 대부분의 투자비를
부채로 충당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정적자
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투자빈곤으
로 인한 급수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
수도 요금을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요금
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115.6%를 인상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수용가의 물
가부담을 고려하여 금회에는 평균 30%를
인상하고 물 소비량이 가장많은 가정용
의 사용구간과 누진율을 증점개선하고
공공용을 다른 유사업종과 통합하여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별표2와 별표3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참고자료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톤 미만이 현재는 1,270원인데 개정이 되면 190원이 올라서 1,460원이 되겠고 20톤은 590원이 올라서 4,060원 30톤은 1,590원이 올라서 7,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의 구성비율을 보면 평창군이 수도전 조례가 1,400전입니다. 그중에서 10톤이 22%, 20톤이 20%, 30톤이 19%에 해당되기 때문에 1,400가구 중에서 860가구가 7,260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구요. 평균치를 내면 한국의 평균 상수도 요금이 17톤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으면 현 2,810원에서 3,280원으로 오르는 값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水道給水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행 평균 가정의 상수도요금이 평균치로 얼마정도이며 소비량은 몇톤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실지 30%를 인상하면 월수도요금 세입증가는 얼마정도 되는지 그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물가안정 차원에서 30%인상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한자리 물가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실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공공요금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 조례는 거기에 역행하는 조례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가정용 최대사용가구 119톤이라고 그랬는데 진부면 하진부리 박호순씨라고 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립주택을 얘기하는것이 아닙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그집입니다.

○ 禹康鎬 議員 : 그집이 전체 여러가구가 사니까 이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집이 한집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이 10톤인데 제일 적은가구는 1,460원씩 내는것이 22%에 해당되니까 약 308호가 거기에 해당되고 제일 많이 내는 가정집으로서는 박호순씨인데 실지는 여러집이 같이 살지만 수도전이 하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처음에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평창군이 전체쓰는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평창이나 도암까지 전부다 상수도량을 전체 쓰는데 다만 상수도요금이 더 올라간다 하는 규정인데 물 쓰는 양에는 이상이 없고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재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1년치가 상수도가 12억이 되는데 상수도요금으로 충당하는것이 약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에서 7억은 적자가 되는데 7억은 일반 상수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고, 오른요금을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은 한두달 써가지고 평균치를 내봐야만 요금이 나올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호순씨는 조금전에 설명해드린걸로 가름하고 증가분 30%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는 위배됩니다만, 한 3년전에 평창군상수도가 완전 적자가 되기 때문에 매년 30%씩 오르도록 먼저 1대 의원님들이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금년에 30%가 오르는데 이 내용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30%가 올라도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지 다른물가는 집행부에서 오르지 못하도록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네.

○ 禹康鎬 議員 : 실지 상수도요금을 30% 올린다는것은 주민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지 평균을 따졌을때 20톤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은 별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가정에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이 17톤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일반가정에서 적게 쓰는것이 30톤이고 웬만한 집은 40톤정도 가까이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담이 30%이상 될수도 있습니다.

많은부담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물가비교표가 있는데 이 물가비교표도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커피가 한잔에 1,000원인데 1,000원 하는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평창에도 1,200원하는데,

○ 都市課長 權純喆 : 커피를 1,500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1,500원이라 하면 좀 그런것 같아서 1,000원으로 고쳤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평창군의 제일 첫번째 가정용 요금표에서는 평창군의 현실입니다. 10톤이 22%이고, 20톤쓰는 가정이 20%, 30톤 쓰는 가정이 19%입니다. 도합 30톤 미만이 평창군 전체의 61%에 해당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이 평균치 이하가 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유는 옛날의 상수도 요금을 차츰차츰 올렸어야 되는데 과거에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30%가 오른다면 피부로 느낌은 좀 많은것 같지만 실지 많은금액은 아니되겠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많지않다고 생각하지만 금액으로 봤을때는 몇천원이니까 얼마 안될수 있지만 실지 증가율을 봤을때는 많은증가율이거든요.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것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의회에 넘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실과장들께서 가서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주민입장을 생각해서 통과되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여기서 제동이 걸려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는 올려줄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해준다, 그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여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 비추어 봤을때도 이 30%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낳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재검토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權純喆 : 이 사항은 우리 평창군의 만성적인 수도 적자와 또 1월 달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꼭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서 만성적자를 해결해야 합니까? 가장 치밀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물문제를 군민한테 부담시켜서 해결

할려는 의도가 좀 그렇습니다.

○ 都市課長 權純喆 : 타시군에 비하면 별첨 자료가 있지만 저희군이 물값이 비싼것이 아닙니다. 커피한잔에 아까 밑에 1,500원이라고 했는데, 한잔먹는 커피가 1,500원인데 10톤미만, 22%, 그러니까 308가구가 물값을 한달쓰고 1,460원을 낸다는것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 禹康鎬 議員 : 다른것 예를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물쓰면 얼마 받습니까? 하루종일 목욕비는 똑같은데, 알겠습니까.

○ 議長 金樂雲 :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립에 의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제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확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확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平昌郡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5時57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보건사업과장 손동흠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주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를 자문·개선코자 실천협의회를 구성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전문가, 관련공무원, 주민대표들중 10명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기능은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세부계획수립·시행 및 제도 건강증진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장의 명을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가족보건계장,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參 照 >

· 平昌郡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지금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석중인 보건의료원장을 회장으로 할수 있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조례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료원장을 계

속 공석으로 두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원장을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계속 장기간 원장이 공석이 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 禹康鎬 議員 : 제가 의원이 된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1년동안 공석이였었는데 앞으로 공석이 안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도의 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도적으로만 존치하게 되어 있는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을 주민들이 건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것이 그냥 형식상으로 있으면 안되고 실지 필요한 기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

졌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禹康鎬 議員 : 실시 협의회라던가 무슨 위원회 같은것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회의도 한번 안하는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것이 많지 않습니까?

○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지금까지 그런것이 많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보건소법이 7월 1일부터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겁니다.

○ 禹康鎬 議員 :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평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樂雲 :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채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용옥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회기가 보다 성숙된 내일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한 뜻깊은 회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42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燾 文

- 議 員 李 洙 現
- 議 員 金 斗 經
- 議 員 禹 康 鎬
-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 郡 守 金 容 郁
- 副 郡 守 朴 容 康
- 企 劃 室 長 申 大 松
-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 內 務 課 長 李 永 德
- 財 務 課 長 權 赫 昇
- 地 籍 課 長 南 大 鉉
- 社 會 課 長 金 榮 柱
-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 產 業 課 長 金 時 漢
-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 建 設 課 長 洪 基 杓
- 都 市 課 長 權 純 喆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 昌 吉
- 保健事業課長 孫 東 欽
- 社會指導課長 尹 澈 竣
- 技術普及課長 李 宇 炯

○ 議會事務課

- 事 務 課 長 李 京 植
- 議 事 係 長 咸 京 鎬
- 地方行政主事補 邊 相 得
- 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

【 議 席 】

○ 議席表 (16面에 실음)

.....

【 報 告 事 項 】

○ 의안접수사항

- . 정부의소규모교육청통·폐합방침철
회촉구건의안
('96.6.18-이수현의원의3인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사항

- .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심사
결과중역부분발생
('96.6.7 - 평창군에 동의요구
'96.6.8 - 평창군수 동의통지)
- . 199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6.6.10-예결특위위원장유돈문제출)

199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2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7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9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을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출 함.

3. 주요골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96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의 내역은 취득 1건, 교환취득 1건, 교환처분 1건등 총 3건으로 취득재산 1건은 평창군의회 청사 증축 522m²이며, 교환취득 1건은 군유림집단화를 위하여 사유림 취득 3필지 12,109m²와 교환처분 1건은 사유림 취득에 대한 교환처분 1필지 8,132m² 임.

4. 검토의견

- 가. 의회청사 증축은 현 청사 건물면적의 협소와 건축당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방수처리 미흡 등으로 증축이 불가피하며 참다운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설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나. 군유림 교환 취득은 집단화를 통해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나 교환취득에 따르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

'9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4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급수구역내 개발에 따른 물 수요충족 및 농촌지역의 급수량증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진부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소요될 부족재원을 보충하므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발행을 동의 요구함.

3. 주요골자

지방채 차입계획

< 특별 회 계 >

○ 사 업 명 : 진부상수도시설확장사업

○ 기 체 규 모 : 일십억원(₩1,000,000,000)

○ 기 체 선 :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기 체 종 류 : 증서차입

○ 발 행 시 기 : '96. 5.

○ 이 율 : 7%

○ 상 환 기 간 :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상 환 재 원 : 균 비

4. 검토의견

가. 개발로 인한 물수요 충족 및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군비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이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투자적 지방채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지방채 발행시기, 원리금상환 등의 문제를 보다더 철저히 검토하여 군비가 효과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평창군 포상조례 증 개정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 1996. 3. 23
- 나. 제출자 : 평창군수
- 다. 회부일자 : 1996. 4. 15
-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상훈법시행령 및 강원도 포상조례 개정의 내용에 맞도록 포상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을 지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포상심의 위원회 조정(명칭변경) : 안제9조제2항
· 평창군인사위원회 →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 나. 평창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지정 : 안제9조제3항
· 위 원 수 : 위원장을 포함한 8인
· 위원지정 :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내무과장,
위원 기획실장, 사회·산업·산림·건설과장,
간사 서무계장

4. 검토의견

- 가. 포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오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단순히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위원구성원의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구성원으로서 명칭변경으로 인한 운용의 실효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의 부과·징수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조례 제6조제1항)이 「내부 위임규정」에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되어 평창군사무와 읍면위임조례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명에 "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담배소비세 제외)"를 신설

4.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가 지금까지는 군수의 처리사무로써 읍면장에게로 내부위임이 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군이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으로 기관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 주민의 부담과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이니만치 시행에 따르는 세무행정의 시행착오등으로 인한 조세저항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의 연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소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자연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역주민이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할 때에는 수수료의 50%를 경감하
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제3호)

4. 검토의견

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이 되어야 하나 지역주민의 경우 행락객들에
의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오랜동안 관습적으로 이
용해 오고 있던 지역들로서 외래 행락객들과 차등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그 지역의 범위가 군 관내로 확대가 됨으로 인하여 원거리 비지정
관광지 이용시 거소확인등의 곤란에서 오는 마찰이 예상되므로 사전 철
저한 홍보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군세조례중 개정할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법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체납액 증가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통령령 및 내무부령의 개정('95.12.30)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정함.(안 제6조의2)

나.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한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로 정함(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가능한 지역을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으로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창군의 경우 읍면사무소 소재지 이외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조례 제6조의2 제1항에서 오지지역으로 지정을 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등에서의 징수 및 납부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나. 현금 수납의 경우 자칫 오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군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안 제10조)

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안 제22조)

4. 검토의견

가. 농촌주택의 군세감면 범위를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여 농촌정주의식 고취와 주거환경개선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동일과세 대상에 대하여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세의 형평을 기하였다고 판단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 폐기물관리법 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3. 23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4. 15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95. 8. 4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변경된 용어정리

< 용 어 > 일반폐기물 → 생활폐기물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일반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자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일반폐기물배출자 → 생활폐기물배출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나.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차등부과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 일반 " :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특별관리지역은 상향된 과태로 부과적용.

4. 검토의견

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들이며,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함으로써 쓰레기 투기행위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타당한 사항이라 판단되나, 개정규정에 맞추어 단속행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사료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 수도 급수 조례 증 개정 조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 현행 상수도 요금은 톤당 323원으로 총괄 생산원가 696원에 훨씬 못미침으로써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부채 또한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고,
- 맑은물 공급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 추세에 비추어 볼때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반면, 낮은 수도요금과 군 재정력 빈곤으로 대부분의 투자비를 부채로 충당함으로써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 투자빈곤으로 인한 급수난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을 년차적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려는것임.

3. 주요골자

- 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때 115.6%를 인상하여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용가의 물가부담을 고려하여 금회에는 평균 30%를 인상하고[안 별표2],
- 나.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사용구간과 누진율을 중점개선 하며[안 별표2],
- 다. 「공공용」을 다른 유사업종과 통.폐합하여 절수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안 별표3].

4. 검토의견

- 가.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투자에 상응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지 사용료를 인상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다만, 물가부담등을 고려하여 점증적인 인상과 소비량에 따른 누진율을 중점 보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 1996. 5. 15

나. 제출자 : 평창군수

다. 회부일자 : 1996. 5. 23

라. 상정일자 : 1996. 6. 10 제4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제안이유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를 자문, 개선코자 실천협의회 구성.

3. 주요골자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전문가, 관련공무원, 주민대표들중 10명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나.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주민건강증진과 관련한 세부계획수립·시행 및 제도, 건강증진사업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

다. 위원의 임기는 2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5조)

라.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가족보건계장,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제도적으로만 존치하게 되는 조직체가 되어서는 않되며,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나. 기타 체계 및 자구정정,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